

상장사·중소기업의 투명회계·적법세금·성공경영 정보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공인회계사 조세 저널 eAnSe.com

온라인 30분내 Q&A 문서답변과 방송



2025/ 5/ 21 통권 1728호

CEO·CFO·COO·회계책임자·조세전문가·재경실무자·총무담당자·모든 관리자용 **名品** 주간지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전직원 회람 공지 MEMO+경영관리자의 재무의사결정과 稅計經營 戰略

CFO·회계실무자·조세전문가 정보

-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이해 (3)
- 금융소득은 비교과세 방법에 의해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 연말정산 실수, 5월에 가산세 없이 정정 신고하세요
- 해외주식 양도 하셨나요? 6월 2일까지 확정신고 하세요!
-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과세소득으로 열거안된 비교세 이익들>

구분항목	과세제외	과세되는 경우
국내상장주 양도차익	소액주주 과세예외	대주주 양도부분, 장외거래, 해외주식
채권매매차익	국공채, 회사채 매매익	채권보유기간의 이자는 이자소득합산과세
외환율차익	개인의 외환차익 등	국내화폐, 외국화폐 거래차익 등
서화·골동품 양도익	양도가액 점당 6천만원 생존 원작자의 작품 양도	6천만원 초과분, 원작자 아닌 유통작품들
보장성 보험차익	화재·손해보험 차익	사업용자산의 보험이익은 사업소득 합산
저축성 보험차익	보험기간 10년 이상 상품	보험기간 10년 미만, 중도해약익, 납입보험료 2억 초과
손해배상금	정신, 육체, 물질적 피해보상	계약의 위약, 해약 배상금은 기타소득과세
사내급식 및 식사대	월 20만원 이하	월 20만원 초과액 등은 근로소득 합산
회사제공사택 등	출자자 아닌 임·직원 혜택	지배주주, 출자임원 제공금액은 근로소득합산

(안세회계법인대표이사박윤중공인회계사작성)

CMO·마케팅 Tax consulting 섹션

- 상여를 가상자산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아니고,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임 (p.13)

안세회계법인
02-829-7557

회계·경영·세무·재무·인사·노무·총무·법무·기획·재경 (AnSe consulting)
경영관리·총무 outsourcing + secretarial 서비스 + 중소기업창업·보육·지원센터

안건조세정보
02-829-7575

주간 안세회계법인 재경저널

통권 1728호 / 주간 21호

2025. 5. 21. (수)

· 발 행 인: 이윤선
· 제 작: (주)안건조세정보
· 대표전화: (02) 829-7575
· FAX: (02) 718-8565



- ♣ 회원가입 문의 안내
 - 서울·수도권·경기·인천
전화: (02) 829 - 7575
팩스: (02) 718 - 8565
 - 부산·경남
전화: (051) 642 - 3988
팩스: (051) 642 - 3989
 - 대구·경북
전화: (053) 654 - 9761
팩스: (053) 627 - 1630
 - 대전·충청
전화: (010) 3409 - 2427
팩스: (042) 526 - 1686
 - 수원·안산
전화: (010) 5255 - 6116

- ♣ 매월 구독·자문료 5만원
온라인 입금계좌
· 우리은행
594 - 198993 - 13 - 001

**정회원(주간+월간 등)
월 구독료
5만원**

eAnSe.com의 차별화특장

- ① 오늘 30분내 Q&A 전송
- ② 핵심내용 영문번역
- ③ 재경전반 동영상강의
- ④ 즉답(010-2672-2250)
- ⑤ 온라인 세무상담실
- ⑥ 모든 정보 통합검색
- ⑦ 마케팅 세무회계전략
- ⑧ CEO·CFO 경영에세이
- ⑨ 전담회계사 파견자문
- ⑩ 세무·회계·재경고문
- ⑪ 최고경영자의 세금전략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최고경영자 재경전략	과세소득으로 열거 안 된 비과세 이익들	표지
CEO의 경영산책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이해 (3)	2
세무·회계상담자문 (남들은무슨고민할까?)	- 직원 경품지급 관련 - 지점간 거래에서 과세대상여부 문의 - 판매 장려금 회계처리와 원천징수 - 공동사업자 소득월액 보험료	5 6
눈에 맞는 절세미인	금융소득은 비교과세 방법에 의해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7
매일 절세재무요점	- 연금 가입자 세제 혜택 -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	10 11
직장인 Survival	시간을 지배하는 5가지 실천법	12
최신 판례예규 (이런저런유권해석)	- 상여 등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초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49조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보는 것임 (사전법규소득-702, 2024.11.27)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에서 철거·폐쇄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부 자산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자산을 포함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서면법규법인-1671, 2024.06.27)	13 14
세정뉴스와 해설	‘연말정산 실수로 과다공제’ 6월 2일까지 정정신고해야 가산세 0원	15
마케팅 Tax consulting	상여를 가상자산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아니고,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임	
세무정보	- 연말정산 실수, 5월에 가산세 없이 정정 신고하세요 - 해외주식 양도 하셨나요? 6월 2일까지 확정신고 하세요! -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15 21 37
세무환율정보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4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의 이해 (3)



이재권 안세회계법인 지속가능경영자문센터장
공인회계사, 경영학박사, CIA

한국윤리경영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현), 서강대 내부감사전문과정 교육운영위원
서울시립대, 국립 한밭대 겸임교수, 한국회계정보학회 부회장
한국경영교육학회 산학협력 부회장,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민관협의회 공정신뢰분과위원장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 ERS(Enterprise Risk Services) 부대표
한국공인회계사회 정보기술연구위원장
Touche Ross Australia, Melbourne : Advanced Technology Group 근무

MBK파트너스(MBK)의 홉플러스 사태로 사모펀드(PEF·기관전용 사모펀드)의 역할과 규제에 대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사모펀드는 경영권 참여를 목적으로 한 기관전용 사모펀드다. PEF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은 이른바 ‘먹튀’ 이미지에서 시작된다. PEF가 인수 기업의 경영에는 소홀한 채 주요 자산 처분 등으로 투자금을 회수한다는 지적이다. 사모펀드는 5~10년 내에 환매를 하다 보니 단기적 수익화에 치중하면서 장기적으로는 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경우가 발생한다. 특히 차입매수(LBO) 방식으로 무리한 차입을 일으켜서 기업을 인수하고 나면 경영효율화보다는 상환에 치중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따라서 사모펀드의 LBO 방식 기업인수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없으면 단기적인 부채 집중, 기업유동성 악화, 자산유출 위험, 고용 및 투자 위축 등이 구조적으로 반복될 소지가 있다. 이러한 문제들이 특정 기업을 넘어 산업 전반에 걸친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될 우려도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우리 기업의 지속가능한 기업 경영을 위한 건전한 거버넌스의 구축 운영의 관점에서 OECD 기업지배구조원칙(2023)을 주요 내용을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표 1〉 기업지배구조의 주요 내용: 예시

구 분	주요 내용 (예시)
I. 주주의 권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주의 기본적인 권리 ● 핵심적인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정보와 투표권 ● 주주의 동등한 대우 ● 특수관계자 거래: 이해상충에 관리 등

II. 기관투자자와 중개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투자자의 주주참여 정책(예:스튜어드십 코드) 공개 ● 기관투자자의 중요한 이해충돌관리의 공개 ● 투자분석 및 자문, ESG 평가기관의 규제 ● 내부거래와 시세 조정 금지 등
III. 공시와 투명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자자에 중요한 정보의 공시 ● 국제적 회계 및 공시기준에 의한 투명성 ● 재무보고에 대한 외부감사 ● 정보공시 채널 : 형평성, 적시성, 접근성
IV. 이사회 의 책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사회 의 의무: 주의의무, 충실의무 ● 이사의 공정성 유지 ● 이사회 의 법을 넘어선 윤리기준 준수 ● 이사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판단 ● 이사의 정확하고, 목적적합하고 적시성있는 정보
V. 지속가능성과 회복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성 관련 정보 공시 ● 기업지배구조에 지속가능성 정보의 공유 ● 이사회 의 중요한 지속가능 리스크와 기회 ● 기업의 이해관계자의 권리, 역할 및 이익과 협력

주주의 권리: "기업지배구조는 주주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

회사의 출자지분에 투자한 투자자는 일정한 재산권을 갖게 되며, 출자지분은 취득, 매각, 이전될 수 있다. 출자지분에 대한 투자를 통해 투자자는 회사의 이익에 참여할 수 있으며, 동시에 출자지분만큼 회사의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진다. 주주총회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기업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기업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투자자가 제공한 자본이 경영자, 이사회 구성원 및 지배주주에 의해 남용되지 않고 보호된다는 신뢰(투자자 신뢰)는 자본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경영자, 이사회 구성원 및 지배주주는 비지배주주의 희생하에 자신들의 이해와 관련된 행동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주주의 동등 대우가 중요하다. 원칙은 기업지배구조에서 국내주주와 외국주주의 동등한 대우를 지지한다. 그러나 이러한 지지는 정부의 외국인투자규제정책을 언급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관계자 거래(related-party transactions)는 이해상충 문제가 적절하게 통제되고, 회사와 주주들의 이익을 보호되는 경우에만 승인, 이행되어야 한다. ① 관계자 거래에 내재된 이해상충 문제는 반드시 해결되어야 한다. ② 이사 및 주요 집행간부는 회사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래 및 사안과 관련하여 자신이 직접적으로 또는 간접적으로나 제3자를 대신하여 중요한 이해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이사회에 고지하여야 한다*.

* G20/OECD Principles of Corporate Governance 2023, OECD 2023, 9.11, p. 20.

기업지배권 시장(markets for corporate control)은 효율적이고 투명한 방식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① 자본시장은 통한 기업지배권의 인수, 기업합병이나 영업양도 등과 같은 예외적 거래를 규율하는 규정과 절차는, 투자자들이 자신의 권리와 구제 절차를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표현되고 공시되어야 한다. 이러한 거래는 주식 종류에 따라 모든 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투명한 가격과 공정한 조건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 . 경영권 방어수단(anti-take-over devices)이 경영진과 이사회에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 OECD(2023), p. 21.

금융위원회는 사모펀드가 국내에 도입된 후 기업가치 제고, 지배구조 개선, 구조조정 지원 등 자본시장의 활력을 높이는 순기능을 해왔지만 역기능도 심각하다는 판단 하에 본격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사모펀드가 인수기업 자산을 담보로 부채를 끌어들이고, 인수 후에도 핵심 자산을 매각해 차익을 극대화하고, 기업을 꺾데기로 만드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다.

부가세 영세율 과표확정 및 회계반영시 외화외상매출금 평가의 기준·재정환율								
통 화 명				5월 9일 (금)	5월 12일 (월)	5월 13일 (화)	5월 14일 (수)	5월 15일 (목)
미	달	러	(USD)	1396.00	1405.60	1400.40	1413.70	1415.80
일	본	엔	(JPY)	956.69	964.23	943.38	958.67	966.12
영	국	파운	(GBP)	1848.86	1868.04	1844.82	1880.72	1878.27
캐	나	다	(CAD)	893.02	1009.34	1002.11	1014.64	1012.95
홍	콩	달	(HKD)	179.57	180.73	179.74	181.32	181.39
중	국	원	(CNH)	192.84	193.81	193.99	196.71	196.32
유	로	화	(EUR)	1567.22	1578.35	1553.25	1581.72	1583.64
호	주	달	(AUD)	893.02	902.75	892.19	914.81	909.86
싱	가	폴	(SGD)	1073.39	1083.36	1071.87	1086.42	1088.20
말	레	이	(MYR)	326.09	327.11	325.90	327.06	330.02

직원 경품지급 관련

Q 일전에 직원에게 지급한 상품금액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질문하였는데, 원칙적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1. 이에 추가 질문으로, 근로소득으로 처리하지 않는 예외사항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2.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상품의 금액은 어떤금액으로 반영하여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A 종속적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의 경우 회사에서 받는 금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만, 현장 작업화나 작업복 등은 근로소득이 아닌 복리후생경비로 처리하게 됩니다.

근로소득으로 처리하는 금액은 시가를 기준으로 반영하시면 됩니다.

지점간 거래에서 과세대상여부 문의

Q 저희는 학교법인 산하 의료기관으로서 현재 법인 내 다른 지점사업자와 임대차계약 체결하여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법인 내 다른사업자(임대인)는 상가용 건물 임대업만 영위하는 사업자이며, 상가 임대의 목적은 면세사업 관련(의료업) 교수 연구실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궁금한점은 동 법인 내 거래 및 면세사업 목적으로 인식되어서 전자계산서 발급 대상이 되는지,

혹은 상대 지점 사업자 특성 상 과세대상이 되어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인지 여쭙습니다.

A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임대사업자는 해당 건물을 사용하는 자의 과면세와 상관없이 과세용역(임대용역)을 제공한 것이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합니다.

무상 수출건 부가세 신고 문의

Q 캐나다에서 중국으로 발주가 나고 invoice 와 지급도 캐나다와 중국 간에 거래 하는 것을 당사가 중간에서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물건을 받아서 수입 신고를 하였고, 무상으로 수출 신고

하어 핸드 캐리 하였습니다.

이때 부가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출 실적 명세서 및 매출 과세 표준에 반영 하여 수입 금액 제외로 신고해야 되는 건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를 국외로 무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을 적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수출실적명세서 등에 영세율로 반영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법인세 신고시에는 귀사의 의견대로 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판매 장려금 회계처리와 원천징수

Q 회사에서 직원에게 판매장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회계처리와 소득구분은 무엇인지? 원천징수 세율은 어떻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A 거래처가 아닌 회사 직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근로소득으로 반영하여야 하므로, 급여에 합산 정산반영하시면 됩니다.

공동사업자 소득월액 보험료

Q 공동사업 구성원의 지역가입 건강보험료가 공동사업의 필요경비 산입(공제)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공동사업 구성원중 한분이 연간소득 3,400만원 초과하여 추가로 납부하는 소득월액 보험료도 공동사업의 사업소득 종합소득의 필요경비 산입이 가능한지 질의하오니 답변 부탁드립니다.

A 지역가입자로서 부담하는 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므로 추가 납부 보험료도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금융소득은 비교과세 방법에 의해 산출세액이 결정된다

상담실 백종훈 차장

금융소득 종합과세제도란 개인별 연간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는 제도를 말하며,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함으로써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별도의 종합합산과세는 필요 없다.

2천만원을 초과하는 이자·배당소득 등 금융소득의 종합과세방법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기로 한다.

금융소득종합과세가 적용되는 소득

금융소득이란 금융자산의 저축·투자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데, 소득세법에서는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여 금융소득이라고 하며 이들 소득 중 2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다.

따라서 은행은 물론 증권회사, 보험회사, 종합금융회사, 자산운용회사와 농·수협, 신용협동조합, 우체국, 새마을금고 등에서 받는 예·적금, 예탁금 등의 이자소득과 국·공채, 금융채, 회사채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 사채이자, 주식 및 출자금에서 발생하는 배당소득이 금융소득의 범위에 포함된다.

① 이자소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내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내에서 받는 예금(적금·부금·예탁금과 우편대체를 포함한다)의 이자와 할인액
-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계 또는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에서 발행한 채권이나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외국법인이 발행한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국외에서 받는 예금의 이자
-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매매차익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
- 비영업대금의 이익
- 상기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금전의 사용에 따른 대가의 성격이 있는 것

② 배당소득

- 내·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과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 또는 분배금, 의제배당
-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증권투자신탁(공·사채투자신탁은 제외)수익의 분배금

금융소득의 과세기간

금융소득도 다른 일반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1년을 단위로 과세되며, 매년 1월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다. 하지만,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는 1월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로,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에는 1월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를 과세기간으로 한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

① 거주자

개인(자연인)과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가 납세의무자이며,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된다.

② 비거주자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당해 사업장의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신고한다.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되는 경우의 산출세액 계산방법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산출세액은 비교과세방법에 의하여 계산하는데, 비교과세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될 때의 소득세가 원천징수시의 소득세보다 적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금융소득을 종합과세할 때의 산출세액과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지 않는다고 가정할

경우의 원천징수세액을 서로 비교하여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비교 과세 방법

- ① (2천만원까지 금융소득 × 14%) +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 여타종합소득금액) × 기본세율]
- ② (금융소득전체 × 14%*) + (여타종합소득금액 × 기본세율)
*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그 세율(예 : 비영업대금 이자는 25%)
- ①·② 중 큰금액으로 산출세액 계산함.(타소득도 있으면 대부분 ①소득이 커서 확정세금이 됨)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의 신고방법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다음 연도 5월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므로, 2024년 금융소득은 2025년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금융소득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도 국내·외에서 받은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 안건조세총서, 기업경영회계·세무, 법인세법상세해설서
- 경제신문자료와 공공기관발표자료 등



연금 가입자 세제 혜택

	국민·공무원·사학 등 공적연금	연금계좌 (연금저축·IRP)
적립액	납입 보험료 소득공제	• 연간 최대 900만원 세액공제(연금저축만 가입시 최대 600만원)
운용수익	없음	• 인출 때까지 과세 이연
수령시점	과세기준일 후 납부한 보험료에서 발생한 소득만 과세 대상 (연금소득으로 과세)	• 연금 지급시 원천징수(세율: 3.3~5.5%) • 1500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연금소득으로 과세)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

	선입선출법	이동평균법
1. 100주 매수	주당 30만원	주당 40만원
2. 100주 매수	주당 40만원	주당 40만원
3. 100주 매수	주당 50만원	주당 40만원



현행 상속세 공제 제도

기초공제		2억원
인적공제	자녀공제	1인당 5000만원
	미성년자공제	1인당 1000만원×19세까지의 잔여일수
	연로자공제	1인당 5000만원
	장애인공제	1인당 1000만원×기대여명 연수
일괄공제		5억원
배우자상속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없거나 5억원 미만인 경우 : 5억원 공제 •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 실제 상속받은 금액(공제한도액 초과시 공제한도액) 공제 공제한도액은 30억원

* 기초공제 및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금융소득 과세 기준표





시간을 지배하는 5가지 실천법

바쁜 현대인을 위한 현실적인 시간 관리 팁

1. '중요한 일'부터 시작하라

긴급한 일보다 중요한 일에 우선순위를 두는 습관은 시간의 질을 바꿔준다. 하루의 에너지가 가장 높은 시간대에 가장 중요한 일을 배치하라. 나머지는 덜 지치고 덜 급하다.

2. 하루 계획은 전날 밤 5분이면 충분하다

자기 전 짧게 내일 할 일을 적어두는 습관만으로도 아침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 계획은 완벽할 필요가 없다. 단지 '방향'을 잡는 것이 핵심이다.

3. 멀티태스킹은 환상이다

한 번에 하나의 일에만 집중하라. 여러 일을 동시에 하려다 보면 집중력은 분산되고, 결국 처리 시간은 길어진다. 집중은 시간을 늘리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

4. '빈 칸'을 일정에 넣어라

모든 시간을 뻑뻑하게 채우면 작은 변수에도 쉽게 무너진다. 여유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회복을 위한 전략이다. 하루에 30분의 여유는 전체 흐름을 지키는 버퍼다.

5. 기록하고 돌아보라

시간이 어디로 흘렀는지 모르는 날이 반복된다면, 짧게라도 기록하자. 매일을 점검하는 습관은 내가 시간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솔직한 거울이다.

최신 판례 예규

Marketing Tax consulting

상여를 가상자산으로 지급받는 경우 근로소득 귀속시기는 실제 지급받은 날이 아니고,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임

상여 등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초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보는 것임

사전법규소득-702, 2024.11.27

■ 질 의

- 질의법인은 회사에 공헌한 종업원들에게 상여로 가상자산을 지급할 예정임
 - 질의법인은 종업원과 '가상자산 지급에 대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서는 체결일 이후 근무요건을 만족한 날 질의법인이 종업원에게 가상자산을 지급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 불록체인 네트워크 환경에 오류 또는 장애가 발생하는 등의 사유로 인해 지급시점이 지연되어 약정서상의 지급일과 실제 지급되는 시점 간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함

질의

- 근로소득을 지급받을 때 약정서상의 지급일과 실제 지급일이 상이한 경우의 귀속시기

■ 회 신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상여 등 근로의 대가를 금전 외의 것으로 받기로 하였으나 지급받기로 약정한 시점을 초과하여 이를 지급받은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49조에서 정하는 때에 해당

하지 않는 경우의 근로소득의 수입시기는 실제로 지급받는 날에도 불구하고 그 지급의무가 확정된 날로 보는 것입니다.

공모 지침, 사업제안서 및 사업협약서 등에 따라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동 지출액은 의료복합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사전법규소득-453, 2024.11.18

■ 질 의

- 질의법인이 *****구역청의 공모지침 등에 따라 '청라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동 지출액의 세무처리 방법
- <답설>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에 가산
- <율설> 기부금으로 처리

■ 회 신

내국법인이 의료복합타운 조성사업에 사업자로 선정된 후 사업자 공모 지침, 사업제안서 및 사업협약서 등에 따라 개발이익을 종합병원 등 비영리 목적시설 개발에 지출하여야 하는 경우 동 지출액은 의료복합타운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보아 취득가액에 가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에서 철거·폐쇄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부 자산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자산을 포함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임

서면법규법인-1671, 2024.06.27

■ 질 의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에서 공장건물을 임차하여 자기 소유 제조설비와 임대인 소유 제조설비로 사업을 영위하던 중소기업이, 자기 소유 제조설비를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2년 이내

- 「임대인 소유의 공장건물과 제조설비」가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향후 임대인은 공장건물과 제조설비 등을 타인에게 동일한 용도로 임대가능) 조특법 63②(2)에 따른 추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1) 공장건물 뿐만 아니라, 제조설비의 일부 또한 임차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2, 질의1이 2안일 경우) 자기 제조설비는 모두 이전하였으나, 임대인 소유 제조설비가 철거되지 아니한 경우 감면요건 충족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5, 2024.6.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555, 2024.6.27.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제1호에서 철거·폐쇄 대상이 되는 공장시설이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 가공, 수선 등의 목적에 사

용할 수 있도록 한 공장의 생산시설과 설비를 의미하는 것이며 일부 자산을 임차한 경우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만, 해당 자산을 포함하여 전부 이전하는 경우에 감면 요건을 충족하는 것입니다.

상증법§78⑥의 가산세 부과대상 경비에 미지급급여가 포함되는지? → 상증법§78⑥의 가산세 부과대상 직·간접경비에는 「미지급급여를 포함한 공익법인의 전체 신고금액」으로 복이 타당함

서면법규법인-3830, 2024.11.28

■ 질 의

• 공익법인인 질의법인은 출연자인 갑의 아들을 '15~'23년까지 직원으로 고용하였으며

- 해당 기간 급여로 신고한 금액은 총 204백만원이나 실제 지급된 금액은 93백만원으로 차액 111백만원은 장부에 미지급금으로 계상

질의

• 상증법 78⑥에 따른 가산세 부과대상인 「이사 또는 임직원에게 지출된 직·간접경비」에 미지급급여가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8조 제6항의 '직접경비 또는 간접경비'에는 공익법인이 「공익법인 회계기준」 제4조에 따라 계상한 미지급 급료가 포함되는 것임



세무·회계·경영(TAM)쟁점뉴스 요약

연말정산 실수로 과다공제 6월 2일까지 정정신고해야 가산세 0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실수 유형을 골라 종합소득세 신고 유의사항을 모아 15일 안내했다.

연말정산 때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경우 6월 2일까지 정정신고해야 하며, 이를 놓칠 경우 가산세를 추가 부담하게 된다.

국세청은 과다공제로 추정되는 근로자에 대해 매년 하반기에 수정 신고를 안내하고, 필요한 경우 사후검증을 통해 과소신고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를 통지한다.

연말정산 때 월세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새로 생긴 공제에 대해 요건을 잘 몰라서, 또는 간소화자료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해 놓쳤던 공제·감면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된다.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기한(올해는 6월 2일)부터 30일 내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다.

지난해 근로소득 외에 인터넷 쇼핑물 운영 등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나 강연료 등의 기타소득 또는 2000만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이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다면, 회사별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된다.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해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및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된다.

근로소득 신고 관련 문의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0번)를 참고하면 된다.

세금 내지 않는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가능한 기업, 3년새 4배로 증가

배당소득세를 내지 않는 감액배당이 가능한 상장사 수가 최근 3년 새 4배 가까이 급증했다.

13일 기업분석연구소 리더스인텍스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4월 25일까지 코스피·코스닥·코넥스 상장사를 대상으로 감액배당이 가능한 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감액배당은 자본준비금이나 이익준비금 같은 상법상 설정된 준비금을 줄이고서 그 재원으로 주주에게 배당하는 방식이다.

일반 배당은 소득세 등을 내지만 감액배당은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익을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주주가 회사에 투자한 돈을 돌려주는 구조여서다.

주주총회에서 자본준비금을 감액하고 이익 잉여금으로의 전입을 결의해 감액배당을 할 수 있는 기업은 2022년 31곳, 2023년 38곳, 2024년 79곳, 2025년 130곳으로 늘었다.

실제 감액배당을 시행한 기업과 금액도 대폭 늘었다. 2022년에 기업 6곳이 1천598억원을 배당했는데, 올해는 41곳이 8천768억원을 배당해 금액 기준으로 448.5% 증가했다.

조사 기간 감액배당 총액이 가장 큰 기업은 메리츠금융지주로, 2회에 걸쳐 총 6천890억원을 배당했다.

이어 두산밥캣(2천709억원), 하나투어(1천131억원), HD현대인프라코어(829억원), 케이카(726억원) 순으로 규모가 컸다.

자본준비금 감액 규모도 2022년 총 5조4천618억원에서 올해 11조4천416억원으로 109.5% 증가했다.

자본준비금을 가장 많이 줄인 기업은 올해 3조원을 감액한 우리금융지주다. 우리금융은 3조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입해 배당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최근 기획재정부는 감액배당에 대한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투자협회, 조세심판원 등 유관기관 의견을 수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더스인텍스는 "기업이 이익잉여금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는데도 자본준비금을 줄여 세금을 면하는 감액배당을 택해 상속 등에 사용할 현금을 확보하는 조세 회피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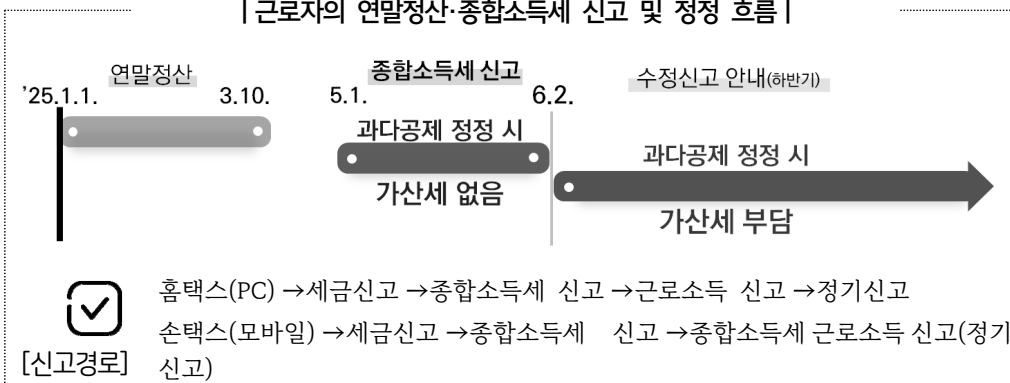
이어 "이 같은 방식은 정부가 추진하는 밸류업(기업 가치 제고) 정책에도 부합하지 않으며, 감액배당을 반복해 기업이 자본금을 계속 쓰면 재무건전성이 악화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연말정산 실수, 5월에 가산세 없이 정정 신고하세요

- 국세청, 2025. 5

- 국세청(청장 강민수)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늦은 근로자들을 위하여 한 번 더 확인해보면 좋을 근로소득 신고 유의사항을 모아 안내해 드립니다.
- 특히, 연말정산 실수로 세금을 적게 낸 근로자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인 6.2.(월)까지 이를 정정 신고하여야 가산세 부담이 없으므로 자주 발생하는 연말정산 실수 유형을 유의하여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근로자의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및 정정 흐름 |



1 연말정산 때 실수로 많이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

- 국세청은 신고내용을 분석해 과다공제한 것으로 추정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하반기에 수정신고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 만일 근로자가 공제·감면을 실수하여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수정신고 시 과소신고 가산세¹⁾와 납부지연 가산세²⁾를 부담해야 하지만, 미리 종합소득세 신고기한까지 정정 신고하면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있습니다.

- 1) 적게 신고한 세액의 10% (거짓 증빙 제출 등 부당하게 적게 신고한 경우 40%)
- 2) 적게 납부한 세액에 대해 1일당 22/100,000 (1년 납부지연 시 본세의 약 8%)

| 연말정산 주요 실수 체크 리스트 |

① 부양가족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조)부모님이나 자녀의 '24년 소득*이 100만원(근로 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한 것은 아닌지? * 근로, 사업, 양도, 퇴직소득 및 2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이자·배당) ※ [연말정산 시스템 개편] 국세청이 확보한 '24년 상반기 소득 자료만으로 소득초과자 분석 ✓ 본인이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조)부모님이나 자녀를 다른 가족도 부양가족으로 신고한 것은 아닌지? * (중복공제 시 인정 순서) ① 배우자 → ② 직전 연도 공제받은 가족 → ③ 종합소득이 가장 많은 가족 <div style="border: 1px solid gray; padding: 5px; margin-top: 10px;"> <p>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뿐 아니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음</p> </div>
② 주택자금 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12.31.기준 1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해당함에도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또는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을 소득공제 받았거나, 월세 지출액을 세액공제 받은 것은 아닌지? ✓ '24.12.31.기준 2주택 이상 보유 세대에 해당하거나, 취득 시 기준시가 요건*을 초과한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을 소득공제 받은 것은 아닌지? * '24.1.1.이후 취득 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주택만 이자상환액 공제 가능
③ 의료비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손 의료보험금을 돌려받고 나서 이를 의료비 지출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출액 전액을 세액공제 받은 것은 아닌지?
④ 기부금 세액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발급받은 기부금영수증이 적격 기부금단체에 기부하고 받은 영수증인지? ✓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으로 이미 다른 가족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 받았거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산입한 것은 아닌지?

2 연말정산 때 미처 못 받은 공제가 있는 경우

- 연말정산 때 월세 계약서 등 지출 증빙을 늦게 확인했거나 새로 생긴 공제에 대해 요건을 잘 몰라서, 또는 간소화자료를 제 때 제출하지 못해 놓쳤던 공제·감면은 직접 종합소득세 신고하여 반영하면 됩니다.
- 신고 결과 추가로 발생하는 환급금은 신고기한(6.2.) 부터 30일 내에, 종합소득세



신고서에 기재한 본인 명의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환급 후 4주 이내에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지급

| 주요 공제혜택 누락 사례 |

① 월세액 세액공제	✓ 월세 지출 증빙(현금영수증·계좌이체 내역), 임대차 계약서 등 공제 증빙 수 세액공제를 놓쳤던 것은 아닌지?
② 교육비 세액공제	✓ 취학 전 아동의 학원비 등 수동(종이) 발급받은 교육비 영수증을 누락했거나, 늦어져 제출하지 못했던 국외 교육비가 있는 것은 아닌지?
③ 기부금 세액공제	✓ '24년 이전에 기부하고 공제받지 않은 이월기부금 공제*를 누락했거나, '24년 은 수동(종이) 기부금 영수증을 빠뜨린 것은 없는지? * [공제율] 1천만원 이하·초과 : ('21·'22년) 20%·35% → ('23년~) 15%·30%
④ 혼인 세액공제	✓ '24년 중 혼인신고를 했으나 혼인세액공제 적용을 누락한 것은 아닌지? *'24~'26년 중 혼인신고한 거주자에 한하여 생애 1회만 적용 가능

3

다양한 소득이 있거나 두 개 이상의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인 경우

- '24년 중 근로소득 외에 인터넷 쇼핑몰 운영 등으로 인한 사업소득이나 강연료 등
의 기타소득* 또는 2천만 원 이상 이자·배당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해당 소득과 근
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을 초과한 근로자는 종합소득세 합산 신고가 필수
- 다른 소득이 없는 근로자라 하더라도 두 군데 이상의 회사에서 급여를 받고 이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못했다면, 회사별로 원천징수영수증 내역을 확인하여 6.2.
(월)까지 이를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 회사별로 연말정산을 이행한 경우에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으면 과소신고 및 납
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하여 상반기 소득기준을 초과한 부양가족의 간소
화 자료 제공을 원천 차단하는 등 추후 납세자가 과다공제로 인해 가산세를 부담
하는 등의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근로소득 신고 관련 궁금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 또는
국세상담센터(☎126 → 0)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1 부양가족 공제 관련 체크 포인트

- 연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은 나이 요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소득 종류별로 기준 초과 여부 판단이 상이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소득 종류별 기본공제 가능한 소득금액 기준 |

✓ 근로소득	식대 등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 500만원 이하자 * 일용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소득금액과 무관하게 기본공제 가능
✓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사업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자 * 농가부업소득, 1주택 임대사업자 등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 제외
✓ 금융소득	원천징수로 과세절차가 종료되는 이자·배당소득 합이 2,000만 원 미만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의무 없는 자
✓ 기타소득	기타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또는 기타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 300만원 이하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자
✓ 연금소득	공적연금의 총 연금액이 연 5,166,666원 이하인 자 또는 연금저축·퇴직연금 등 사적연금소득 총 연금액이 연 1,500만원 이하인 경우로서 분리과세를 선택한 자
✓ 양도소득	부동산, 주식 양도 등으로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양도차익(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장기보유특별공제
✓ 퇴직소득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급여액(퇴직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자
✓ 2개 이상의 소득	2개 이상*의 소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자 * 다른 소득과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 근로소득금액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차감한 금액으로 연 소득 100만원 초과 여부 판단 (예시) 연간 사업소득금액 70만원 + 근로소득 총급여 340만원인 자녀 ☞ 근로소득금액 102만원 (총급여 340만원 - 근로소득공제 340만원×70%) ∴ 사업소득금액 70만원 + 근로소득금액 102만원 = 연간 소득금액 172만원 ➔ 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므로 부양가족공제 불가

○ 부양가족의 소득발생 확인 방법

- 해당 부양가족이 홈택스(또는 손택스)에 로그인하여 소득금액증명원을 발급*받아 확인하면 가장 정확하게 소득 초과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은 개인정보이므로 근로자가 부양가족 소득을 직접 확인은 불가능

발급 경로	홈택스(PC) → 증명·발급·신청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 증명
	손택스(모바일)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신고 → 즉시발급 증명 → 소득금액 증명



참고 2

연말정산 과다공제 주요 사례('24년 귀속 기준)

주요 항목	과다공제 사례
<p>소득기준 초과한 부양가족 공제</p>	<p>연간 소득금액(근로·사업·양도·퇴직소득) 합계액이 100만 원을 초과하는 부양가족을 인적공제 적용</p> <p>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부양가족에 대해서는 경로우대·장애인 등 추가공제뿐 아니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사용금액, 보험료·교육비·기부금 지출액도 공제받을 수 없음</p>
<p>부양가족 중복공제</p>	<p>맞벌이 근로자 부부가 부모님 또는 자녀를 중복으로 공제하거나, 형제·자매간에 부모님을 중복으로 공제</p> <p>* (중복공제 시 인정 순서) ① 배우자 → ② 직전 연도 공제받은 가족 → ③ 종합소득이 가장 많은 가족</p>
<p>사망자·무관계자 부양가족 공제</p>	<p>과세연도 개시일(1.1.) 이전 사망한 부양가족을 공제</p> <p>과세연도 말(12. 31.) 이전 이혼한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받거나, 3촌 이상 관계 가족(삼촌·고모·이모·조카 등) 또는 실제로 부양하지 않는 기초생활 수급자를 부양가족으로 공제</p>
<p>주택자금·월세 세액공제</p>	<p>과세연도 말(12. 31.) 기준 1주택자가 ①주택임차차입금(전세자금대출) 이자상환액·②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또는 ③월세액 세액공제를 받았거나, 2주택 이상자가 ④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택담보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를 적용한 경우</p> <p>(요건) ①~③: 총급여 일정 금액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②는 총급여 7천만원, ③은 총급여 8천만원 이하자) ④: 1주택 이하 보유 세대주가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주택 취득을 위해 차입한 차입금</p>
<p>의료비 세액공제</p>	<p>실손 의료보험금으로 돌려받은 금액을 의료비에서 차감하지 않고 지출한 전액을 세액공제</p>
<p>기부금 세액공제</p>	<p>실제로 기부하지 않고 기부금단체에서 기부금영수증만을 발급받거나 적격 기부금단체가 아닌 단체에서 받은 기부금영수증으로 세액공제</p> <p>동일 세대의 세대주와 세대원이 동일한 기부금영수증으로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 시 각각 필요경비 산입 또는 세액공제</p> <p>기부금명세서의 사업자번호 기재란에 본인 주민등록번호 또는 임의의 숫자를 기재하여 세액공제</p>

해외주식 양도 하셨나요? 6월 2일까지 확정신고 하세요!

- 국세청, 2025.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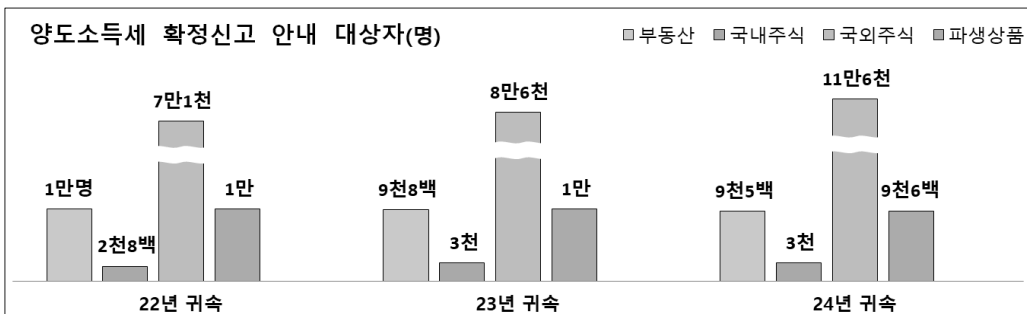
□ 신고개요

- ▶ 5월은 양도소득세를 확정신고하는 달입니다.
- (신고대상)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자는
 - '24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양도하고서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
 -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 및 파생상품을 거래하여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 등입니다.
- (신고기한) '24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5년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고안내

- ▶ 국세청은 확정신고 대상자 약 14만 명*에게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으며, 개인의 해외주식 거래가 늘어 난 영향으로 국외주식에 대한 확정신고 안내 인원이 예년에 비해 증가하였습니다.

* 부동산 1만명, 국내주식 3천명, 국외주식 11만 6천명, 파생상품 1만명



- 확정신고 대상자에 대한 신고 안내문은 모바일로 5월 첫째 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 중에 있으며
- 부동산을 양도한 60세 이상의 납세자에게는 우편 안내문도 함께 발송하여 신고에 어

려움이 없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신고·납부

- ▶ 확정신고 대상자는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를 이용하여 전자신고하거나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자진 납부할 세금은 홈택스 또는 모바일을 통해 전자납부, 신용카드 등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월 2일과 8월 4일까지, 2회로 나누어 분납*이 가능합니다.
* 세액 2천만원 이하는 1천만원 초과분, 세액 2천만원 초과는 전체세액의 50% 분납 가능

□ 신고도움

- ▶ 납세자가 쉽고 편리하게 양도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도록 홈택스·손택스를 통해 다양한 확정신고 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신고서 작성사례와 오류사례 등 여러 도움자료를 한 번에 확인하고 내려받거나 출력할 수 있는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을 제공합니다.
* 홈택스>세금신고>양도소득세 신고>신고도움자료 조회>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 납세자가 기존에 신고했던 예정신고 내역을 확인하여 빠짐없이 신고할 수 있도록 ‘예정신고 내역 미리채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증빙서류는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손택스에서 간편하게 제출하거나 가상팩스 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제출이 가능합니다.
* 홈택스>세금신고>신고부속서류 제출>조회하기>첨부하기>‘가상팩스번호 발급’ 클릭

□ 유의사항

- ▶ 확정신고 안내문을 받지 않았더라도 국외주식 등을 양도하여 신고 대상 양도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의 경우 금융기관(국내증권회사 등)으로부터 안내받은 계산 보조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으며 부동산의 경우 계약서·등기자료 등을 활용하여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확정신고 대상자가 신고기한(6.2.)까지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납부세액에 20%의 무신고 가산세, 미납할 경우 미납세액에 0.022%(1일)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신고기한이 종료된 후에는 무신고자와 불성실 신고 혐의자에 대하여 성실신고 여부를 엄정하게 검증할 예정입니다.

□ ‘성실한 신고가 곧 최선의 절세’라는 점에 유념하여 정확하고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참고 1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개요

- (신고대상) '24년에 부동산, 주식 등을 팔고 예정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2회 이상 양도하고 예정신고는 하였으나 자산 종류별¹⁾로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²⁾하지 않은 납세자입니다.
 - 1) (부동산 등) 부동산·부동산에 관한 권리·기타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주식 등) 상장주식(대주주, 소액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한 경우
 - 2) 합산신고 시 누진세율·양도소득 기본공제 변경 등으로 당초 신고한 양도소득세 납부할 세액이 달라지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임
- 또한 예정신고 의무가 없는 국외주식과 파생상품 거래를 통해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들도 신고 대상에 해당합니다.
- (신고기한) '24년 귀속 확정신고 대상자는 '25년 6월 2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대상 예시>

○ 자산 종류별로 구분하여 합산하며, 다른 종류의 자산과는 합산하지 않음

종류	자산 세부 항목	예시	예정신고		확정신고 대상	
			1회	2회		
				합산 ¹⁾		미합산 ²⁾
부동산 등	• 부동산(토지, 건물) • 부동산에 관한 권리(분양권 등) • 기타자산(회원권 등)	1	×	-		○
		2	○	○		×
		3	○		○	○
주식 등	• 국내주식 등 ³⁾	4	×	-		○
		5	○	○		× ⁴⁾
		6	○		○	○
파생상품	• 국외주식 • 파생상품	7	예정신고 의무 없음			○
		8	예정신고 의무 없음			○

- 1) 자산을 양도하면서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
- 2) 자산을 양도하면서 먼저 양도한 자산의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신고하지 않은 경우
- 3) (신고대상) 상장주식(대주주 및 소액주주 장외거래), 비상장주식
- 4) 단, 국외주식과 손익통산을 하는 경우 확정신고 대상

□ (안내대상자) 올해 확정신고 안내 대상 인원은 약 14만 명*입니다.

* 부동산 등 1만 명, 국내주식 등 3천 명, 국외주식 11만6천 명, 파생상품 1만 명

참고 2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홈택스 도움 서비스

- (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신고서 작성사례, 오류 사례 등 확정신고 도움자료를 한번에 확인하고 내려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홈택스에서 제공합니다.
 - * (홈택스) 세금신고>양도소득세>신고도움 자료 조회>확정신고 도움자료 모음
- (미리채움 서비스)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세자가 예정신고한 내역을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미리채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본사항 입력 시 '예정신고 내역 확인하기'를 클릭하면 예정신고 물건, 양도일자, 취득일자, 소득금액 등을 미리채움
- (편리한 증빙서류 제출) 손택스에서 신고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증빙서류는 스마트폰으로 사진을 찍어 간편하게 제출할 수 있으며, 홈택스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화면에서 납세자별 가상팩스번호를 부여받아 FAX로도 편하게 제출이 가능합니다
 - * (홈택스) 세금신고>양도소득세신고>확정신고>신고 부속·증빙서류 제출

- ① 신고 부속서류 제출 화면에서 '첨부하기' 클릭
- ② 신고 부속서류 제출 화면에서 '가상 팩스번호 발급' 클릭
- ③ 가상팩스번호 확인 및 부속서류 팩스 전송

참고 3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신고·납부 방법 안내

1. 양도소득세 신고 방법

구 분	주 요 내 용
홈택스 (PC,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상자: 모든 종류의 양도소득세 전자신고 시 이용 가능 ○ 접근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PC이용)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 홈택스 로그인 후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확정신고 → 정기신고 선택 (모바일이용) 국세청 손택스 * 세금신고 → 양도소득세 신고 → 양도소득세 일반신고(확정신고) 선택 ○ 이용 시간: 06:00~다음날 01:00(5.1.~6.1.) * 신고 마지막 날(6. 2.)은 24:00까지 운영
우편신고 · 방문신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기한: '25. 6. 2.(월) 18:00까지 ○ 양도소득세 신고서를 작성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우편 또는 직접 접수

2. 양도소득세 납부 방법

구분	주요 내용
홈택스 (PC) · 손택스 (모바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세청 홈택스·손택스 납부(공동·금융인증서 접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납부할세액 조회/납부’ - 서면신고 후 전자납부 하는 경우 ⇒ ‘납부·고지·환급’ → ‘세금납부’ → ‘자진납부’ ○ 신용카드 납부대행 수수료*는 납세자가 부담 * 납부세액의 0.8%(체크카드는 0.5%) ○ 납부시간: 07:00 ~ 23:30(연중 무휴)
금융결제원 (인터넷지로, 카드로택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결제원 사이트 납부(www.giro.or.kr, www.cardrotax.kr) ○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 납부 ○ 납부시간: 00:30 ~ 23:30(연중 무휴)
금융기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납창구, CD/ATM, 인터넷뱅킹, ARS, 공과금수납기* * 금융기관에서 공과금 납부 전용을 위해 설치된 단말기 ○ 납부시간: 은행 운영에 따라 변동 가능
세무서 (무인수납 창구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인수납창구* * 신용카드수납기로 납세자가 직접 이용

참고 4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계산 사례(국외주식 포함)

㉠ (부동산 합산신고) '24년 중에 부동산 등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 합산신고로 추가 납부세액이 발생하여 확정신고

(천 원)

구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주택(6월)	상가(8월)	
양도소득금액	180,000	60,000	240,000
기본공제	2,500	-	2,500
과세표준	177,500	60,000	237,500
세율-누진공제	38%-19,940	24%-5,760	38%-19,940
산출세액	47,510	8,640	70,310
기신고·결정세액	-	-	56,150*
납부할세액	47,510	8,640	14,160

* 기신고·결정세액(56,150천 원) = 47,510천 원 + 8,640천 원

○ 합산신고로 환급받을 세액이 발생하여 확정신고

(천 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주택(6월)	상가(8월)	
양도소득금액	180,000	△10,000	170,000
기본공제	2,500	-	2,500
과세표준	177,500	△10,000	167,500
세율-누진공제	38%-19,940	-	38%-19,940
산출세액	47,510	-	43,710
기신고·결정세액	-	-	47,510*
납부할세액	47,510	-	△3,800

* 기신고·결정세액은 예정신고한 세액임

㉔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24년 중 국내주식을 양도하고 예정신고 후 국외주식 양도 소득에 대해 확정신고·납부하는 경우

○ 국외주식 양도차손을 국내주식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 확정신고

* 차손 금액은 같은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먼저 차감하고, 남는 경우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자산의 소득에서 차감(만약 다른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소득금액비율로 안분하여 차감)

(천 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국내주식 (중소기업 대주주 외)	국내주식 (중소기업 대주주 외)	국외주식	계
양도소득금액	110,000	110,000	△67,000	43,000
기본공제	2,500	-	-	2,500
과세표준	107,500	-	-	40,500
세율	10%	-	-	10%
산출세액	10,750	-	-	4,050
기신고세액	-	-	-	10,750
납부할세액	10,750	-	-	△6,700

해외주식 양도 하셨나요?
6월 2일까지 확정신고 하세요!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천 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국내주식 (일반법인 대주주)	국외주식	계
양도소득금액	342,500	342,500	100,000	442,500
기본공제	2,500	2,500	-*	2,500
과세표준	340,000	340,000	100,000	440,000
세율-누진공제	25% - 15,000	25% - 15,000	20%	20%, 25%
산출세액	70,000	70,000	20,000	90,000
기신고세액	-	-	-	70,000
납부할세액	70,000	-	-	20,000

* 국내·국외주식을 통산하여 양도소득 기본공제 250만 원만 적용(먼저 양도한 자산부터 순서대로 공제)

③ (국내주식 합산신고) '24년 중 국내주식을 2회 이상 양도하고 합산신고 없이 각각 예정신고·납부한 경우

○ 국내주식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

(천 원)

구 분	예정신고		확정신고
	'24.5월 양도 (1년이상 보유 대주주)	'24.8월 양도 (1년이상 보유 대주주)	
양도소득금액	150,000	200,000	350,000
기본공제	2,500	-	2,500
과세표준	147,500	200,000	347,500
세율-누진공제	20% - 0	20% - 0	25%* - 15,000
산출세액	29,500	40,000	71,875
기신고·결정세액	-	-	69,500
납부할세액	29,500	40,000	2,375

*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은 25% 세율 적용

④ (파생상품 합산신고)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을 합산하여 확정신고(예정신고 없음)

○ 파생상품 양도차손을 다른 파생상품 양도소득에서 차감하여 확정신고

*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차익(차손)은 합산(통산)하지 않음

(천 원)

구 분	확정신고		
	국내파생상품	국외파생상품	계
양도소득금액	200,000	△70,000	130,000
기본공제	-	-	2,500
과세표준	-	-	127,500
세율	-	-	10%
산출세액	-	-	12,750
기신고세액	-	-	-
납부할세액	-	-	12,750

* 기본세율은 20%(단일)이나, 한시적으로 탄력세율 10%(단일) 적용

참고 5 주식과 파생상품의 양도소득세 개요

① 주식

구 분	내 용
과세범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주식) 상장주식 중 대주주*(소액주주 장외거래 포함) 및 비상장주식 거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피(1%·50억 원 이상), 코스닥(2%·50억 원 이상), 코넥스(4%·50억 원 이상) · (국외주식) 외국법인이 발행했거나, 외국 시장에 상장된 주식 등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용) 증권사 수수료 등
양도소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손익 통산('20.1.1. 이후 양도분) * 주식 외 다른 자산의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으며, 국내주식과 국외주식 간 양도차익의 통산 신고는 확정신고 시에만 가능
양도소득 기본공제	· 국내주식과 국외주식의 양도소득을 합산한 금액에서 연 250만 원 공제

해외주식 양도 하셨나요?
6월 2일까지 확정신고 하세요!

세 율	· 국내주식: 10%, 20%, 20%-25%, 30%			
	대주주(상장, 비상장)		소액주주(상장 장외, 비상장)	
	중소기업	20%~25%*	중소기업	10%
	중소기업 외	1년 이상 보유 1년 미만 보유	30%	중소기업 외 20%
* 과세표준 3억 원까지 20%, 3억 원 초과분 25% 누진세율 적용				
· 국외주식: 20% (중소기업 주식은 10%)				
신고납부	· 국내주식: 예정 및 확정 신고·납부 · 국외주식: 확정 신고로 종결(예정신고 없음)			

② 파생상품

구 분	내 용
과세범위	· (국내) 주가 지수 관련 파생상품, 주식워런트증권, 차액결제거래 · (국외) 장내파생상품(장외 일부 포함)
양도가액	· 양도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필요경비	· (취득가액)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 · (양도비용) 증권사 수수료 등
장기보유특별공제	· 적용하지 않음
양도소득	· 국내 파생상품과 국외 파생상품 간 손익통산 · 다른 자산 양도소득금액과 통산하지 않음
양도소득기본공제	· 연 250만 원
세 율	· 10%(기본세율은 20%이나 한시적 탄력세율 적용)
공제·감면	· 해당없음
신고납부	· 확정신고로 종결 (예정신고 없음)

참고 6 확정신고 관련 주요 Q&A

1 확정신고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양도소득세 확정신고서, 자산의 취득·양도 등에 관한 부속서류* 등이 필요합니다.

* (예시) 당해 자산의 매도·매입에 관한 계약서 사본,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빙자료 (중개수수료, 신고서 작성비용, 법무사수수료 등), 감가상각비명세 등



2

확정신고를 했는데 신고 안내문을 받은 경우는?

- 확정신고 안내 대상자 선정 시기와 안내문 발송 시기가 일치하지 않아 이미 신고한 일부 납세자에게 발송될 수도 있습니다.
- 정상적으로 확정신고를 하신 경우 신고 이후에 수령한 신고 안내문은 참고만 하시면 됩니다.

4

주식 양도 시 당해연도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음연도로 이월공제가 되는지?

- 당해연도 상반기와 하반기의 양도손익(차손)은 통산가능하나,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공제되지 않습니다.

5

안내문을 받고 조회해 본 파생상품 거래내역 등 홈택스 모두채움 내용이 틀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 홈택스(손택스)에서 조회되는 파생상품 거래내역과 양도차익 등은 증권사로부터 통보 받은 자료이므로 오류가 있는 경우 거래하는 증권사를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6

이미 제출한 전자신고를 수정할 수 있나요?

- 신고기간 동안 동일한 건에 대해 여러 번 전자신고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최종 제출된 신고서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됩니다.

참고 7**해외주식 양도 관련 주요 Q&A**

1

해외주식을 거래하여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 다른 해외주식 양도차익과 통산하여 신고할 수 있나요?

- 같은 과세기간의 해외주식·국내주식* 거래에서 양도차손과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면 확정신고 시 해외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손)과 국내주식의 양도차손(익)을 통산 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20년도 양도분부터)

* 국내주식은 상장법인의 대주주 양도분 및 비상장주주의 양도분에 한함

2

**해외주식을 매매한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서는 어떻게 작성하며 제출서류는 무엇
인지요?**

-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를 통해 전자신고를 하거나 다음 서식을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①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 및 납부계산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 ② 「주식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 첨부서류(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되므로, 이를 증명할 수 있는 필요경비 증빙 등)
 - 주식거래내역서
 - 양도 및 취득비용 증빙
 - 외국과세당국에 신고한 양도소득세 신고서 사본(외국납부세액계산 증명) 등

- 거주자가 해외상장주식 등을 금융기관(주로 국내증권회사)을 통하여 양도한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확인한 「주식양도소득금액 계산보조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②「주식 등 양도소득금액 계산명세서」(소득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84호서식 부표2) 및 필요경비 증빙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별첨

양도소득세 세액계산요령

■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세액계산

2007년부터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부동산을 사고 팔면서 얻은 실제이익(실제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하는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제도」가 전면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실제 증빙에 의한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 실지 양도가액

-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을 말합니다.

● 실지 취득가액

- 양도자산의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을 말합니다.
취득에 소요된 실지거래가액이란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취득원가에 상당하는 가액을 말합니다.
 - ※ 소득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에서 규정한 취득원가 상당액
 -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 : 매입가액에 취득세·등록세 기타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

- 자기가 행한 제조·생산 또는 건설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원재료비·노무비·운임·하역비·보험료·수수료·공과금(취득세·등록세 포함)·설치비 기타 부대비용의 합계액
- 취득가액 계산시 포함되는 것
 - ① 자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매입하는 경우에 발생한 채무를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현재가치로 평가하여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 계상한 경우 당해 현재가치할인차금을 포함한다. 단,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에 동 현재가치할인차금의 상각액을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로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당해 금액을 공제한다.
 - ② 당사자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취득원가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취득가액에 포함한다.

● 기타 필요경비

- 자본적지출액, 양도비 등 실제 증빙에 의하여 계산한 가액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자본적지출액
 - ① 소득세법시행령 제67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자본적 지출액
 - 「자본적 지출」이라 함은 사업자가 소유하는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를 말합니다. 이에는 다음 각호의 1에 규정하는 것에 대한 지출을 포함합니다.
 1.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
 2. 엘리베이터 또는 냉난방장치의 설치
 3. 빌딩 등의 피난시설 등의 설치
 4. 재해 등으로 인하여 건물·기계·설비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되어 당해 자산의 본래 용도로의 이용가치가 없는 것의 복구
 5. 기타 개량·확장·증설 등 제1호 내지 제4호와 유사한 성질의 것
 - ② 양도자산을 취득한 후 쟁송이 있는 경우
그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 등의 금액으로서 그 지출한 연도의 각 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된 것을 제외한 금액
 - ③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 양도비 등(증권거래세, 양도소득세 신고서 작성비용, 소개비)
 - 비교 : 취득자금으로 활용된 은행대출이자 등은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음

●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의 계산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 필요경비) ×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율
- 공제율

* 요약정보 → 장기보유특별공제율 참고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건물에 대하여 적용(미등기제외)
- 보유기간의 계산방법
 - ① 보유기간은 양도자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초일산입)
 - ② 상속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부터 기산한다.
 - 비교 : 세율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시는 피상속인의 취득일 부터 기산
 - ③ 소득세법 제97의2조가 적용되는 경우(배우자 등 이월과세)에는 증여자가 당해 자산을 취득한 날부터 기산한다.
 - 비교 : 세율적용을 위한 보유기간 계산시에도 동일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대상
 - 3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하는 토지·건물에 대하여 적용(미등기제외)
- 장기보유특별공제 제외대상
 - ① 부동산이 아닌 자산(승계한 조합원입주권 등)
 - ② 보유기간 3년 미만의 부동산
 - ③ 미등기 양도자산(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등기가 불가능한 자산 등 제외)
 - ④ 국외부동산
 - ⑤ 중과대상인 다주택자가 양도하는 조정대상지역 주택(2018.4.1. 이후 양도분)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자 1인당 연간 2,500,000원을 공제합니다.

● 부동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

- 양도차익 = 실지양도가액 - 실지취득가액 - 기타필요경비
- 양도소득금액 = 양도차익 - 장기보유특별공제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기본공제
- 양도소득세산출세액 = 양도소득과세표준 × 양도소득세율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양도소득금액 계산

● 1세대1주택으로서 고가주택(그 부수토지 포함)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체 양도차익 중 12억원(양도일이 '21. 12. 7. 이전은 9억원, 이하 같음)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만 과세하고 12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 고가주택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양도당시 실지거래 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는 것

- 고가주택 해당자산의 양도차익 = 양도자산 전체의 양도차익 $\times \frac{\text{양도가액} - 12\text{억원}}{\text{양도가액}}$

- 고가주택 해당자산의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양도자산 전체의 장기보유특별공제액 $\times \frac{\text{양도가액} - 12\text{억원}}{\text{양도가액}}$

계산사례

- (1) 양도일 : 2022.1.3. 취득일 : 2006.5.7.
- (2) 양도실가 : 15억 원, 취득실가 : 8억 원, 기타 필요경비 : 3천만 원
* 보유기간 중 10년 이상 거주

풀이

- (1) 전체 양도차익계산 : 15억 원 - 8억 원 - 3천만 원 = 6억 7천만 원
- (2) 과세대상 양도차익의 계산 : 6억 7천만 원 $\times (15\text{억 원} - 12\text{억 원}) / 15\text{억 원} = 1\text{억 } 3\text{천} 4\text{백 만 원}$
- (3) 공제할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 (6억 7천만 원 $\times 80\%$) $\times (15\text{억 원} - 12\text{억 원}) / 15\text{억 원} = 1\text{억 } 7\text{백} 2\text{십만 원}$
- (4) 과세대상 양도소득금액 : 1억 3천4백만 원 - 1억 7백2십만 원 = 2천6백8십만 원

■ 주식등 양도소득세

● 과세대상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등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코스피, 코스닥, 코넥스)의 대주주가 소유한 주식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단 1주만 양도하여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주권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소유한 주식등을 증권시장을 통해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이 아니나, 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는 경우에는 과세대상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주식등
 - 비상장법인의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대주주·소액주주의 구분 없이 모두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비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K-OTC(Korea Over-The-Counter)를 통해 양도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주식등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합니다.(소득세법 §94①3, '18.1.1.이후 양도분부터)
-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

- 소득세법 제94조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58조에 규정된 특정주식·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세법상 주식등이 아닌 기타자산의 양도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국외주식등
 - 양도일까지 계속 5년 이상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둔 거주자가 양도한 국외주식등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입니다.
- 국외전출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이민 등 국외전출하는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가 출국 당시 소유한 국내 주식 등에 대하여는 해당 주식 등을 출국일에 양도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 1) 국외전출일 전 10년 중 5년 이상 국내에 주소·거소가 있을 것
 - 2) 과세대상 자산을 일정 비율 또는 금액* 이상 소유할 것(대주주)
 - * 주식양도차익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167의8①) 등 준용('19.11.이후 국외전출하는 경우부터는 부동산 주식 포함)

참고.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20.1.1. 이후 양도분부터)

- 세법 개정내용
 - 국내·국외주식 양도소득 간의 손익통산 허용
 - (개요) 국내·국외주식 투자로 손실했더라도 세부담이 발생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하여 손익통산 범위를 확대('20. 1. 1.이후 양도분부터)하되, 기본공제는 합산 적용
 - (손익통산)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불가 → 국내·국외주식 손익통산 허용*
 - *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국내주식은 국외주식과의 손익통산 불가
 - ** 특정주식등 기타자산으로 보는 국외주식도 손익통산 불가
 - (기본공제) 국내·국외주식 각각 연 250만원 → 국내·국외주식 합산 연 250만원
- 손익통산 사례
 - 거주자 갑은 국내 비상장주식 A를 양도하여 △400만원 손실, 국외주식 B를 양도하여 300만원 이익 실현
 - (개정) 국외주식 B에서 발생한 양도소득과 국내 비상장주식 양도차손을 통산하여 △100만원으로 계산 → 소득세 없음

개 정 전		▶	개 정 후	
국내 비상장주식 A	△ 400		국내 비상장주식 A	△ 400
해외주식 B	300		해외주식 B	300
순소득	△ 100		순소득	△ 100
양도소득금액	300		양도소득금액	△ 100
세 액	60		세 액	0

참고. 주식등 양도 관련 대주주 요건

-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년도 종료일 현재 본인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포함한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경우
 - 주식 등 소유의 비율이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그 기준에 미달하였으나 해당 사업연도 중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지분율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취득일 이후부터 대주주에 해당

< 세율 적용시 대주주 요건 >

(지분율, 시가총액)

구분	'16. 4. 1.이후 양도	'18. 4. 1.이후 양도	'20. 4. 1.이후 양도	'24. 1. 1.이후 양도
① 코스피	1% 또는 25억 원 이상	1% 또는 15억 원 이상	1% 또는 10억 원 이상	1% 또는 50억 원 이상
② 코스닥	2% 또는 20억 원 이상	2% 또는 15억 원 이상	2% 또는 10억 원 이상	2% 또는 50억 원 이상
③ 코넥스	4% 또는 10억 원 이상	좌동	좌동	4% 또는 50억 원 이상
④ 비상장*	4% 또는 25억 원 이상 ('17. 1. 1.이후)	4% 또는 15억 원 이상	4% 또는 10억 원 이상	4% 또는 10억 원 이상

* K-OTC(협회 장외시장)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등의 경우 : 4%이상 또는 40억원 이상

금융소득의 종합과세

- 국세청, 2025. 5

제1절 개요

1 금융소득이 종합과세되는 납세의무자

- 거주자
 - 개인(자연인), 개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
 - ※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않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은 분리과세
- 비거주자
 -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이 국내 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과 실질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2 과세기간

- 소득세는 1년을 단위로 과세되며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가 과세기간이다. 다만, 다음과 같이 예외가 있다.
 -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 : 1월 1일부터 사망한 날까지
 - 거주자가 출국으로 인하여 비거주자가 되는 경우 : 1월 1일부터 출국한 날까지

3 자산소득의 합산과세 폐지

- 소득세는 개인별로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납세의무자 유형별 금융소득 과세방법

가. 거주자

- ① 소득세가 종합과세되는 이자·배당소득은 개인별 연간 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한다.
- ② 비과세 및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의 합계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천만 원에 대하여는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국내에서 원천징수 되지 않은 국외금융소득과 자본을 투자한 공동사업에서 분배받은 배당소득은 2천만 원 이하라도 종합과세 한다.
 - 국내금융소득도 원천징수 되지 않은 경우에는 종합과세 대상이다.

나. 비거주자

-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가 없는 비거주자는 소득이 발생하는 단계에서 원천징수하여 분리과세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일부 예외가 있다.

(1)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 국내사업장이 있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로서 금융소득이 해당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에 실질적으로 관련되거나 귀속되는 경우에는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징수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소법 §122·§124·§125)
- 다만, 「소득세법」제51조 제3항에 따른 인적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제52조에 따른 특별소득공제, 제59조의2에 따른 자녀세액공제 및 제59조의4에 따른 특별세액공제는 하지 아니한다.(소법 §122)

(2) 분리과세 대상 금융소득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는 각 소득별로 구분하여 그 발생단계에서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방법이 적용된다.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도 동 금융소득이 해당 국내사업장이나 부동산임대소득에 실질적으로 관련되지 않거나 귀속되지 않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 따라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여도 소득세가 종합과세 되지 않는다.

※ 조세협약에 의한 과세

국내사업장이거나 부동산임대소득에 관련되지 않는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또는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부동산임대소득이 없는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우리나라와 해당 비거주자의 국가 간에 체결된 조세협약에 의한 제한세율이 적용된다. 다만, 동 비거주자

가 해당 국가의 수익적 소유자(Beneficial Owner)가 아닌 경우에는 제한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비거주자의 금융소득 종합과세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이 있는 금융소득
 -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 신고·납부,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과 징수는 거주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원천징수세율을 거주자와 동일하게 적용
- 국내사업장 또는 부동산임대소득과 관련이 없는 기타의 금융소득
 - 금융소득의 크기에 관계없이 원천징수·분리과세
 - 원천징수세율 : 조세조약의 제한세율(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20%)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체계

① 금융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
② 비과세 금융소득

- 공익신탁의 이익, 장기저축성보험차익
- 장기주택마련저축 이자·배당, 개인연금저축 이자·배당, 비과세 종합저축 이자·배당(1명당 5천만 원 이하), 농·어민 조합 예탁금이자, 농어가 목돈 마련저축 이자, 녹색예금·채권 이자, 재형저축에 대한 이자·배당, 경과규정에 따른 국민주택채권 이자
-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영농·영어조합법인 배당, 재외동포전문투자신탁(1억 원 이하) 등으로부터 받는 배당, 녹색투자신탁 등 배당, 저축지원을 위한 조특법에 따른 저축에서 발생하는 배당,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

(-)
③ 분리과세 금융소득

- 장기채권이자 분리과세 신청(30%), 비실명금융소득(45, 90%),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 7년(15년) 이상 사회기반시설채권이자(14%), 영농·영어 조합법인(1,200만 원 초과분)으로부터 받는 배당(5%), 농업회사법인 출자 거주자의 식량작물재배업소득 외의 소득에서 발생한 배당(14%), 특정사회기반시설집합투자기구의 배당(5%), 투융자집합투자기구의 배당(14%),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의 이자·배당(9%), 세금우대종합저축 이자·배당(9%),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의 비과세 한도(200만 원, 400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 등

(=)
④ 종합과세 금융소득

- 1) ① - (② + ③)의 금액 중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 종합과세됨
- 2) ① - (② + ③)의 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 국내외 금융소득으로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과세
 - 그 외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분리과세

제2절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금융소득 = 이자소득 + 배당소득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 금융소득 = 금융소득 - 종합과세 제외 금융소득

1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금융소득

○ 비과세되는 금융소득은 과세대상이 아니고,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은 원천징수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므로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가. 비과세되는 금융소득

- (1) 「소득세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 ① 「공익신탁법」에 의한 공익신탁의 이익
 - ② 장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비과세 금융소득
 - ① 개인연금저축의 이자·배당
 - ② 장기주택마련저축의 이자·배당
 - ③ 비과세종합저축의 이자·배당
 - ④ 조합 등 예탁금의 이자 및 출자금에 대한 배당
 - ⑤ 재형저축에 대한 이자·배당
 - ⑥ 농어가목돈마련저축의 이자
 - ⑦ 우리사주조합원이 지급받는 배당
 - ⑧ 농업협동조합근로자의 자사출자지분 배당
 - ⑨ 영농조합법인의 배당

- ⑩ 영어조합법인의 배당
- ⑪ 농업회사법인 출자금의 배당
- ⑫ 재외동포전용 투자신탁 등의 배당
- ⑬ 녹색예금, 녹색채권의 이자와 녹색투자신탁등의 배당(조특법 §91조의13)
- ⑭ 경과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채권 등 이자(94. 12. 22. 소법 부칙 §9)
- ⑮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액 중 200만 원 또는 400만 원까지의 금액

나. 분리과세되는 금융소득

(1) 「소득세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 ① 부동산 경매입찰을 위하여 법원에 납부한 보증금 및 경락대금에서 발생하는 이자(14%)
- ② 실지명익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이자(45%)
- ③ 2017. 12. 31. 이전에 가입한 10년 이상 장기채권(3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으로 분리과세를 신청한 이자와 할인액(30%)
- ④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
- ⑤ 수익을 구성원에게 배분하지 아니하는 개인으로 보는 법인격 없는 단체로서 단체명을 표기하여 금융거래를 하는 단체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는 이자·배당(14%)
- ⑥ 금융소득(비과세 또는 분리과세분 제외)이 개인별로 연간 2천만 원(종합과세 기준 금액)이하인 경우(14% 또는 25%)

(2)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분리과세 금융소득

- ① 발행일부터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설채권으로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발행된 채권의 이자(14%)
 - ☞ 2010. 1. 1. 이후 발행하는 사회기반시설채권은 최종 상환일까지의 기간이 7년 이상(15년 → 7년)으로 변경 되었으며, 2010년부터 수해방지채권은 분리과세 대상에서 제외되었음
- ② 영농조합법인의 배당(5%)
- ③ 영어조합법인의 배당(5%)
- ④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배당(9%)
- ⑤ 재외동포전용투자신탁 등의 배당(5%)
- ⑥ 집합투자증권의 배당소득에 대한 과세특례(5%, 14%)
- ⑦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등에 대한 이자·배당(14%)
- ⑧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비과세 한도(200만 원, 400만 원)를 초과하는 금액(9%)

- ⑨ 특정사회기반시설(뉴딜 인프라) 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배당소득(9%)
- ⑩ 투자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 배당소득(14%)
- ⑪ 기회발전특구집합투자기구 투자자 이자·배당소득(9%)

※ 조건부과세대상

- ① 2016. 1. 1. 이후 선박투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 ② 2017. 1. 1. 이후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해외자원개발투자전문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3)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분리과세

- ① 비실명금융자산으로서 금융회사 등을 통해 지급되는 이자·배당(90%)
- ②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발행된 비실명채권에서 발생된 이자(2000. 12. 31.까지는 20%, 2001. 1. 1. 이후 15%)

비실명채권 종류	발행일	만기
외국환평형기금채권	1997.12.31. ~ 1998. 3.30.	1년
고용안정채권	1998. 3.30. ~ 1998. 7.29.	5년
증권금융채권	1998. 9. 1. ~ 1998.10.31.	"
중소기업구조조정채권	1998.11. 9. ~ 1998.12.29.	"

※ 비실명채권은 매입·매도 시 실명확인과 자금출처조사가 면제되는 채권으로서 최종소지자가 실명으로 상환받는 경우에는 증여세까지 면제된다.

2 종합과세되는 금융소득

가. 금융소득이 2,000만 원(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금융소득 중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 전체를 종합과세한다. 다만,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기점으로 한 급격한 세 부담 증가 문제를 보완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 시 최소한 원천징수세율(14%) 이상의 세 부담이 되도록 하기 위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만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2천만 원 이하 금액은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산출세액 계산 시 「소득세법」제62조의 규정에 따라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여 계산하는 종합과세 방식과 금융소득과 다른 종합소득을 구분하여 계산하는 분리과세 방식에 의해 계산된 금액 중 큰 금액을 산출세액으로 한다.
-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의 초과여부를 계산할 때 배당소득은 배당가산(Gross-up)하지 않은 금액으로 한다.

- ☞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기준금액 이하 금액은 형식적으로 종합과세되나 원천징수세율에 의해 산출세액을 계산하므로 실질적으로는 분리과세되는 것과 동일함
- 금융소득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당가산(Gross-up)한 금액을 종합과세 금융소득으로 한다.
- 예외적으로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원천징수세율 25%)은 종합과세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더라도 종합과세한다.

나.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국외에서 받는 금융소득
- 국내에서 받는 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으로서 「소득세법」제127조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
 - ☞ 2천만 원(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 여부 판단 시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도 합산한다.

3 배당가산액(Gross-up 금액)

- (1) “배당가산액”이란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 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주주 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배당액에 10/100(2011.1.1. ~ 2023.12.31.까지는 11/100, 2009.1.1. ~ 2010. 12.31. 기간의 배당소득분은 12/100)을 가산(Gross-up)하는 금액이다.
 - ☞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하였다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하게 된다.
- (2)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 ①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분배금
 - ②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 ③ 의제배당(Gross-up 적용되지 않는 의제배당 제외)
 - ④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 제19항 제1호에 따른 경영참여형 사모집합투자기구(「법인세법」제51조의2 또는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6을 적용받는 법인은 제외)로부터 받는 배당
 - ☞ Gross-up 적용 요건
 - ㉠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일 것
 - ㉡ 법인 단계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소득을 재원으로 지급받는 배당일 것

㉔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이면서 종합소득세율(누진세율) 적용분일 것

(3) 배당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

○ Gross-up되는 배당소득이 아니므로 배당세액공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 ①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 ②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받는 금액
- ③ 집합투자기구(사모투자전문회사 제외)로부터의 이익 :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 ④ 다음에 해당하는 의제배당
 - 자기주식(출자지분) 소각이익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
 - 1%의 재평가 세율이 적용된 토지의 재평가차액을 자본전입함으로 인한 의제배당
 - 법인이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준비금 등을 자본전입함에 따라 해당 법인 외의 주주 등의 지분비율이 증가한 경우 증가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 등의 가액에 의한 의제배당
- ⑤ 법인세 면제 등을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 「조세특례제한법」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최저한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법인세의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조세특례제한법」외의 법률에 의한 비과세·면제·감면 또는 소득공제를 포함한다)를 받은 법인 중 「소득세법」시행령 제27조의 3(법인세의 면제 등을 받는 법인 등)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배당소득금액에 아래 산식의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text{비율} = \frac{\text{직전 2개 사업연도의 감면 대상 소득금액의 합계액} \times \text{감면비율}}{\text{직전 2개 사업연도의 총소득금액의 합계액}}$$

※ 비율은 100%를 한도로 한다.

- ⑥ 분리과세 배당소득
- ⑦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 중 2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는 배당소득
- ⑧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 ⑨ 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 ⑩ 파생결합금융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제3절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따른 산출세액

1 금융소득의 세액계산 방법

○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 ① 금융소득 중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4%)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는 기본세율(6 ~ 45%)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을 합계하여 산출세액으로 하고,

$$\text{산출세액} = (\text{금융소득 2천만 원} \times 14\%) + (\text{종합소득 과세표준} \times \text{기본세율})$$

- ② 금융소득 전체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세액 전부를 기납부세액(2천만 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포함)으로 공제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한다.

☞ 따라서 전체 금융소득 중 2천만 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분리과세와 같은 결과가 된다.

2 종합소득세 기본세율

과세표준 \ 귀속연도	2021~2022년		과세표준 \ 귀속연도	2023~2024년	
	세율	누진공제액		세율	누진공제액
1,200만 원 이하	6%	-	1,400만 원 이하	6%	-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15%	108만 원	1,400만 원 초과 ~ 5,000만 원 이하	15%	126만 원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22만 원	5,0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24%	576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35%	1,490만 원	8,800만 원 초과 ~ 1억5천만 원 이하	35%	1,544만 원
1억5천만 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40만 원	1억5천만 원 초과 ~ 3억원 이하	38%	1,994만 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40만 원	3억원 초과 ~ 5억원 이하	40%	2,594만 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40만 원	5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42%	3,594만 원
10억원 초과	45%	6,540만 원	10억원 초과	45%	6,594만 원

3 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의 비교과세

가. 비교과세제도의 의의

-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소득으로서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지만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은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해당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해 5월 1일 ~ 5월 31일까지(성실신고확인 대상자는 6월 30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 소득세를 구조가 종합소득 과세표준 1,400만 원 이하 6%의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 있는 경우
 -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의 산출세액이 오히려 원천징수한 세액보다 적어질 수 있다.
 - 이는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을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종합과세하려는 기본취지에 어긋나는 것이다.
- 이에 따라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에 대해서는 세액계산특례규정(비교과세제도)을 두고 있다.

나. 일반적인 경우의 비교과세에 의한 종합소득세 산출세액의 계산

-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소득 산출세액계산은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와 종합과세 기준금액 이하이지만 국내에서 원천징수되지 않은 금융소득이 있는 경우는 각각 다르게 계산한다.
- 비교과세에 의한 산출세액 계산 시 출자공동사업자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이 아닌 “다른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한다.

(1) 금융소득이 2,000만 원(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 거주자의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포함된 금융소득금액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①과 ② 중 큰 금액
 - ① 다음 ㉠과 ㉡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종합과세 방식)
 - ㉠ (금융소득 중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 +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6% ~ 45%)
 - ㉡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 × 원천징수세율(14%)

$$\text{㉠} \left(\begin{array}{l} \text{기준초과금액}^* + \text{금융소득 외의 다른} \\ \text{종합소득금액} \quad \quad \quad \text{- 종합소득공제} \end{array} \right) \times \text{기본세율} \\ + \text{㉡} \text{ 종합과세 기준금액}(2,000\text{만 원}) \times 14\%$$

* Gross-up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Gross-up 금액을 가산한 금액

☞ Gross-up 대상 배당소득이 있는 경우 2천만 원 초과 부분만 Gross-up을 적용

② 다음 ㉠과 ㉡의 세액을 합산한 금액(분리과세 방식)

㉠ 금융소득 × 원천징수세율(14%, 25%)

㉡ (금융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 - 종합소득공제) × 기본세율

$$\text{㉠ 금융소득} \times 14\% \quad (\text{비영업대금이익 25\%}) \quad + \quad \text{㉡} \left(\begin{array}{l} \text{금융소득 외의} \\ \text{다른 종합소득금액} \end{array} - \text{종합소득공제} \right) \times \text{기본세율}$$

* 다만, ㉡의 세액이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에 대하여 14%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과 금융소득 및 출자공동사업자에 대한 배당소득을 제외한 다른 종합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을 합산한 금액(“종합소득 비교세액”)에 미달하는 경우 종합소득 비교세액으로 한다.

(2) 금융소득이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 위 ② 분리과세 방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으로 한다.

4 배당세액공제

가. 배당세액공제 대상 배당소득금액의 계산

○ 종합과세 기준금액(2천만 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금액은 다음과 같이 순차적으로 합산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소령 §116의2)

① 이자소득부터 먼저 합산

②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을 합산

③ 배당가산(Gross-up)이 적용되는 배당소득을 합산(소법 §17조 ③ 단서)

나. 배당세액공제방법

○ 종합소득금액에 배당가산(Gross-up)된 배당소득금액이 합산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당세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한다.

○ 배당세액공제액의 계산방법

배당세액공제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①, ② 중 적은 금액을 적용한다.

① 배당가산액

② 종합소득 산출세액 - [금융소득 이외의 종합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한 금융소득의 산출세액(분리과세 시 산출세액)]

※ 배당가산액(Gross-up금액) = 배당소득 × 10/100('24. 1. 1. 이후 배당 소득분)

※ '11. 1. 1. ~ '23. 12. 31. : 11/100, '09. 1. 1. ~ '10. 12. 31. : 12/100

5 기납부세액의 공제

- 종합소득으로 과세되는 금융소득에 대한 소득세에서 해당 금융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차감하여 납부세액을 계산한다.
- 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전체 금융소득(기준금액 2천만 원 포함)에 대하여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전체 금융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다.

◎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 사례

다음 자료에 의하여 종합소득 산출세액과 배당세액공제액을 계산하시오.

< 자 료 >

(1) 2024 귀속 종합소득현황

- ① 은행예금 이자 : 20,000,000원
- ② 비영업대금이익 : 10,000,000원
- ③ 비상장법인 배당 : 30,000,000원
- ④ 사업소득금액 : 50,000,000원

(2) 종합소득공제는 5,100,000원으로 가정

< 계 산 >

- 금융소득 = ① + ② + ③ = 60,000,000원
- 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금액 : 60,000,000 - 20,000,000 = 40,000,000원
* 기준금액 초과금액은 이자, G-up 제외 배당, G-up 대상 배당 순으로 적용
- 배당가산(Gross-up) 대상 금액 : 30,000,000원
- 배당가산액 : 30,000,000 × 10% = 3,000,000원
-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 ㉡ 중 큰 금액] : 18,136,000원
 - ㉠ 종합과세방식 :

$$[(\text{종합과세 기준금액 초과금액} + \text{배당가산액} + \text{다른 종합소득금액}) - \text{종합소득공제}] \times \text{기본세율} - \text{누진공제액} + (\text{종합과세 기준금액} \times \text{원천징수세율}) = \text{산출세액}$$

$$[(40,000,000 + 3,000,000 + 50,000,000 - 5,100,000) \times 24\% - 5,760,000] + (20,000,000 \times 14\%) = 18,136,000\text{원}$$
 - ㉡ 분리과세방식 :

$$[(50,000,000 - 5,100,000) \times 15\% - 1,260,000] + [10,000,000 \times 25\% + 50,000,000 \times 14\%] = 14,975,000\text{원}$$
- 배당세액공제[㉢, ㉣ 중 적은 금액] : 3,000,000원
 - ㉢ 배당가산액 : 30,000,000 × 10% = 3,000,000원
 - ㉣ 위 종합소득 산출세액(18,136,000원) - 위 분리과세방식 산출세액(14,975,000원) = 3,161,000원